하자보증서

Engineering Guarantee Insurance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주)나이스디엔비

증권번호 제 201702-0084-100053-00 호

계 약 자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이명근	보증채권자	아산시청
보증금액	金 參阡貳百七拾六萬六阡參百參拾五원整		₩ 32,766,335-
보증기간	2017년 02월 21일 부터 2022년 02월 20일 까지 (1,826일간)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계약내용]

계 약 명 아산온천 미소지움 아파트 신축공사 (토목 -도시계획시설공사)

계약금액 ₩ 1,092,211,137-

계약기간 2013년 08월 07일 부터 2017년 02월 21일 까지

하자책임기간 2017년 02월 21일 부터 2022년 02월 20일 까지

우리조합은 하자보증서 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하자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빙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7년 02월 08일

증권발급점 : 서울본점

전 화 번 호 : 02-582-3303

주 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
엔지니어링회관 (방배 2동)

EGi 엔지니어링공제 Engineering Guarantee Insurance

이사장 이우정

대리인 마케팅본부장 배형준

❖ 증권의 약관 및 발급사실 여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www.e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뒷면에 첨부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약관

【보통약관】

제 1조 (보증책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 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이하 "보증채무"라 한다)하여 드립니다.

제 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제 6조제 2항 또는 제 7조제 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6. 미설치로 인한 때
7.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 3자에 의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제 380조에 따라 제 3자(이하 "하자보수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② 조합이 제 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시설설치 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 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조합의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조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또는 그 사본) 및 계약서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하자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7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 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제 7조의 조사를 마친 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9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 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 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 및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합의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1조 (분쟁의 조정) 보증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 1조 (총칙)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하자보증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재정지원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승인·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제 2조 (보증금 지급액) ①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하자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의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